

2025년도『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 기업(사업화)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

경상북도에 소재한 발달장애인과 가족구성원의 공동창업자의 경쟁력 제고와 성장 촉진을 위한 『2025년도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 기업(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0월 28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1 개요

□ 사업목적

- 경상북도에 소재한 발달장애인과 가족공동창업자의 경쟁력 제고와 성장촉진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① 경상북도 지역에 발달장애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있는 가족공동창업 기업
 - ② 경상북도에 거주 중인 발달장애인 중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 (지원규모) 3개사 내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규모 조정·확정 됨
- (지원내용) 사업수행 기간 내에 최종결과물 제출 건에 대한 비용 지원
 - 지원금은 총사업비(부가세 제외)의 100% 이내
 - 선정기업은 자부담 면제(부가세 10%납부)
 - * 안동지역 산불(재난구역 선포)에 따른 지역기업 부담 완화
- (신청방법) 수혜기업(장애인기업)과 제작기업(경상북도 내)이 컨소시엄으로 신청
 - * 제작업체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 센터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가능
- (지급절차)
 - 공고→접수→서류심사→선정→사업수행→결과보고→지원금 지급
 - * 본 사업의 지원금은 수혜기업에서 제작업체로 선집행, 센터에서 후 지급함

2

지원내용

□ 신청자격 : 경상북도 내 발달장애인 가족공동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지원 제외대상

요건	세부내용
① 휴·폐업	○ 휴업 중 또는 폐업한 경우
② 장애인기업확인서 만료	○ 지원금 지급요청일 기준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체
③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④ 채무불이행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⑤ 기타사항	○ 기타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지원분야 (①, ②, ③ 중 택1, 예비창업자는 마케팅만 지원가능)

구분	지원분야	지원금액	지원내용	비고
기업지원 (선택)	① 마케팅 - 온·오프라인 마케팅활동 전반 * 홈페이지 및 상세페이지제작, 단순 디자인 비용은 제외	3,000,000원	총 사업비의 100% *부가세 10% 별도 (안동지역 산물 재난구역 선포에 따른 지역기업 부담 완화)	자부담 면제
	② 시제품 개발 * 업종과 관련되지 않은 시제품 미인정	8,000,000원		
	③ 사업화(환경개선)지원 - 인테리어+집기구매 * 사업비의 70%이상 인테리어, 30%이하 사업관련 집기 구매편성 가능(인테리어100% 가능, TV, PC 및 사무기기 불인정)	10,000,000원		
멘토링 (필수)	선정기업 전원	무상	사업화 관련 무상 멘토링 지원	-

* 명시된 항목 이외는 지원·수행할 수 없으며, 심사평가에 따라 지원금이 하향 조절될 수 있음

※ 최대 지원금 산정 예시

(단위 : 원)

지원 금액 사업비(공급가액) 기준 100% (A)	선정기업(수혜기업) 부담		기업 증빙 금액 (총사업비) 100% (C=A+B)
	기업부담	부가가치세 10% (B)	
① 마케팅	3,000,000	300,000	3,300,000
② 시제품	8,000,000	800,000	8,800,000
③ 사업화	10,000,000	1,000,000	11,000,000

* 사업비는 선정기업이 제작기업에 선지급, 적격심사 후 센터에서 선정기업으로 지급함

□ 지원절차

절차	내용	일정
신청 및 접수	내방,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10.28(화) ~ 11. 4(화)
지원업체 선정평가 (서면평가)	선정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지원업체 선정 및 발표	11월 (선정자 개별안내)
선정대상자 멘토링 지원	선정기업 멘토링* 지원 * 마케팅 기법 강화를 위한 전문가 멘토링	11월
사업수행	선정기업 사업 수행	11월
중간 및 최종 점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11월
지원금 지급 등	서류검토 후 지원금 지급, 만족도 조사	11월~12월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미제출·기재 착오·연락 두절·신청자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 제출서류에 작성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 또는 입증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선정평가 및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증빙가능 사항만 기재)
- 센터는 제출서류의 보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가 고지한 기간 내에 보관하지 않으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출한 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5. 10. 28.(화) ~ 11. 4.(화), 15:00 도착 분 까지

※ 11월 4일(화) 15시 이후 접수된 신청서 불인정

□ 접수방법 : 내방,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메일 발송 후 확인전화 必)

접수처	
주소	(42709) 경북 안동시 동흥2길 20, 가치만드소
전화	054-900-1258~60
접수메일	debc_d01@debc.or.kr
담당자	지역육성부 담당자

□ 제출서류

※ 유효기간이 있는 증빙서류의 경우,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서류만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경우 허위서류 제출로 간주하여 처리됨

※ 제출한 결과물에 대해 센터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비고
1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		센터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	●		센터서식
3	견적서 및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		
4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복지카드 불가)	●		
5	장애인기업확인서		●	
6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7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최근 2개년)		●	
8	센터 교육 수수료증(25년 1월 1일 이후 교육수수료증)		●	

* 25년도_안동가치만드소기업지원_000(기업명)을 메일제목으로 하여 순번대로 1개의 PDF파일 합본으로 제출요망
 ex) 메일제목 : 25년도_안동가치만드소기업지원_삼성전자(기업명),
 파일명 : 25년도_안동가치만드소기업지원_삼성전자(기업명)

4

선정심사 및 결과발표

□ 선정발표 : 개별 안내

- 예비후보자를 선정하여 선정기업이 사업 포기 및 해약 등의 사유로 잔여 예산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 순차적 지원 예정

□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방법) 선정평가표(정량 및 정성)에 따른 서류 심사실시

연번	평가항목		배점
1	• 기업 업력 및 최근 매출액 (각 10점)		20점
2	• 기업(제품) 경쟁력, 기술 개발인력, 전문성 등		20점
3	• 지원 필요성		20점
4	• 지원 결과물 활용 계획		20점
5	• 지원을 통한 매출 증대, 사업화 가능성		20점
6	•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여부(2점)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교육 수료증(3점) (25년 1월 1일 이후 발급받은 교육수료증) 	5점
총점			105점

* 예비창업자는 기업 업력 및 매출액 항목 제외. 별도항목 추가

- (선정기준) 심사위원회(3인 이내)의 평가점수를 합산 후 총점 평균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5

최종결과물 제출

□ 제출기한

○ 선정기업은 사업 마감 기한(2025년 11월 27일)까지 제출서류 목록에 해당하는 서류제출 필수

□ 제출서류 목록

※ 카드거래는 불인정함(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업체는 불가)

※ 계좌이체를 통한 거래만 가능하며,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수취자 성명 및 계좌 번호가 확인되는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한 결과물에 대해 센터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비고
1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완료 보고서	●		센터서식
2	설문조사서	●		센터서식
4	과제수행내역 및 결과 증빙자료 - 수행사진(전후 비교, 화면캡처) 등	●		
5	지출 관련 증빙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거래명세서 등	●		
6	기업 통장사본	●		
9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6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산정

○ (지급기준)

구분	기준
마케팅	기업 판로 및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비용 지원 * 홈페이지 및 상세페이지 제작, 단순 디자인비용 불인정
시제품	신제품 개발 등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제품 비용 지원(금형제작X) * 사업과 관련 없는 시제품제작 등은 불인정함 ex) 음식점업, 가공식품제조→밀키트제작(O), 서비스 및 수리업→밀키트 제작(X)
사업화	근로 환경개선 및 업무와 직접 연관된 집기 구매비용 지원 *사업비는 인테리어 70% 이상, 집기 30% 이하 편성(인테리어 100% 가능) 단, TV, PC, 프린터 등의 집기는 불인정. 생산 및 판매에 연관된 집기구매 가능

* 제작업체가 해당 과제와 관련없는 업종, 업태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 지급 제외

- 선정기업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 선정기업이 사업 마감기한(11. 27.)까지 사업 완료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비용 허위 지급한 경우
- 센터의 보완요청에도 선정기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지원금 환수 조치

- 지원금의 지급 이후 동일 건에 대해 타 기관이나 단체의 비용을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작업체에 리베이트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해석을 따르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